

## 가족돌봄휴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Q1. 가족돌봄휴가는 어떤 경우에 사용 가능한가요?

A. 가족(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조부모,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자녀양육의 사유로 사용 가능합니다. 복무권자의 승인 하에 사용하시면 되며, 복무권자가 요청할 경우 사유발생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Q2. 최근 가족돌봄휴가가 연장된걸로 하는데, 최대 며칠까지 사용가능한가요?

A.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10일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으로 올해를 한정하여 10일 (한부모가정은 15일)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 Q3.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을 위해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A. 아래와 같이 4개 사유에 한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①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가족이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 중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 ② 만 18세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 19관련 휴원(교)할 경우
- ③ 자녀가 코로나19자가격리대상이 됐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원(교)중지 조치 받은 경우
- ④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원격수업·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

### Q4.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정부지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알려주세요.

A.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나, 올해는 정부로부터 코로나 관련 사유의 경우 인당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가족돌봄휴가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에서 신청

※ ERP>HR>개인업무>급여>증명서 발급>육아급여증명서 발급>가족돌봄휴가 확인서 발급

### Q5. 가족돌봄휴직과 병행해서 사용 가능한가요?

A. 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모두 합해 120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의 경우 연간 90일 사용가능하나, 우리회사는 직원 편의를 위해 120일 까지 사용 가능토록 확대하여 운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